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12.11)



http://jungangno-prugio.com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홈페이지(http://jungangno-prugio.com)의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jungangno-prugio.com) 및 사전예약 관람을 병행 운영합니다.
-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방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고 사전방문 예약 후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견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은 개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과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10:00~14:00, 은행장구 접수불가)
 - 아래의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견수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나, 방문 가능 일자는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와 동반자 1인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동행불가하고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는 경우
 -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 당사 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함.
-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202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청 건축주택-51225호(2020.12.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1가 101-1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5층~지상44층, 아파트 2개동 총 298세대 및 부대부리시설(본 건축물은 주거복합단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이 복합되어 계획됨) (특별공급분 143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9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9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5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19세대)
-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²,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공)	약사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대지비율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세대수	저층우선배정세대수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민영주택	202001350	01	84.9850	84A	84.9850	28.3488	113.3338	56.0838	169.4176	13.1777	150	15	15	30	4	10	74	76	4								
		02	84.9900	84B	84.9900	27.5159	112.5059	56.0872	168.5931	13.1786	74	7	7	14	2	5	35	39	2								
		03	84.9360	84C	84.9360	31.0142	115.9502	56.0515	172.0017	13.1702	34	3	3	6	1	2	15	19	1								
		04	84.9650	84D	84.9650	29.8681	114.8331	56.0706	170.9037	13.1747	40	4	4	8	1	2	19	21	1								
					합계														298	29	29	58	8	19	143	155	8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84C	84D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장애인	4	2	1	1	8
	국가유공자	4	2	1	1	8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2	1	1	7
	중소기업 근로자	4	1	0	1	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15	7	3	4	29	
신혼부부 특별공급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20% 범위)	소득기준	23	11	5	6	45
	일반공급 (25%)	7	3	1	2	13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4	2	1	1	8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 건설량의 7% 범위)	10	5	2	2	19	
합계	74	35	15	19	14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타입	층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5%)						중도금(60%)						잔금(2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5%)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84A	3층	4	155,200,000	337,800,000	493,000,000	2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23,250,000		
	4-5층	8	156,800,000	341,200,000	498,000,000	24,9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49,800,000	124,500,000		
	6-9층	16	158,700,000	345,300,000	504,000,000	25,2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50,400,000	126,000,000		
	10-19층	40	163,700,000	356,300,000	520,000,000	26,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30,000,000		
	21-30층	40	168,800,000	367,200,000	536,000,000	26,8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53,600,000	134,000,000		
	31층이상	42	171,900,000	374,100,000	546,000,000	27,3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54,600,000	136,500,000		
84B	3층	2	146,700,000	319,300,000	466,000,000	23,3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16,500,000		
	4-5층	4	148,300,000	322,700,000	471,000,000	23,55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47,100,000	117,750,000		
	6-9층	8	150,200,000	326,800,000	477,000,000	23,85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19,250,000		
	10-19층	20	154,900,000	337,100,000	492,000,000	24,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23,000,000		
	21-30층	20	159,900,000	348,100,000	508,000,000	25,4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50,800,000	127,000,000		
	31층이상	20	163,100,000	354,900,000	518,000,000	25,9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29,500,000		
84C	3층	1	153,000,000	333,000,000	486,000,000	24,3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21,500,000		
	4-5층	2	154,900,000	337,100,000	492,000,000	24,6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49,200,000	123,000,000		
	6-9층	4	156,500,000	340,500,000	497,000,000	24,85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49,700,000	124,250,000		
	10-19층	10	161,500,000	351,500,000	513,000,000	25,65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51,300,000	128,250,000		
	21-30층	10	166,500,000	362,500,000	529,000,000	26,45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52,900,000	132,250,000		
	31층이상	7	170,000,000	370,000,000	540,000,000	27,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35,000,000		
84D	3층	1	151,700,000	330,300,000	482,000,000	24,1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20,500,000		
	4-5층	2	153,300,000	333,700,000	487,000,000	24,35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21,750,000		
	6-9층	4	155,200,000	337,800,000	493,000,000	24,65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23,250,000		
	10-19층	10	160,200,000	348,800,000	509,000,000	25,45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27,250,000		
	21-30층	10	165,300,000	359,700,000	525,000,000	26,25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52,500,000	131,250,000		
	31층이상	13	168,400,000	366,600,000	535,000,000	26,75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53,500,000	133,750,000		

II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분
- 내용
- 1회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적이 가능하고 당첨후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할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예비 포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경기·청양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에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인지? 다음 각 목의 사항(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절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금액이 전용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 각 청약통장에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지속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단, 투과외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상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인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대구광역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지속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입주자지속 순위 자격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주택수 및 과거 당첨사실 판단 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세대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19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 중복·동별·호별·형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순위별로 점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터넷 청약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구분	가 점 제	추 점 제
전용면적 85㎡ 이하	40%	60%

- 2007.9.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위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 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